

韓國 大學圖書館의 실태와 改善방향

李 漢 龍
(延世大 圖書館學科)

1. 머리말

도서관이 없는 대학은 없지만 도서관다운 기능을 다하는 대학 도서관은 얼마나 될까?

흔히 말하기를 대학 도서관은 '대학의 심장부'라고 한다. 대학 도서관이 존재하는 것은 학생들과 교수진의 강의 및 연구 욕구를 충족시키는 우선적인 대학교육 목적과 일치하는 까닭에, 또한 이것의 충실한 역할 없이는 대학이 존재할 수 없다는 데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의 대학 도서관들은 흔히 대학의 부속 시설로 생각되지, 교육의 심장부라고 생각하고 운영되는 도서관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다. 대학에서도 일이 많은 곳이 도서관이다. 새로와지는 학문과 문헌들, 그리고 이것들과 경주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방학도 없이, 쉴 사이 없이 주야로 일하고 있는 곳이 대학 도서관인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의 수는 8·15 광복 이후 대학수의 증가와 더불어 늘어나기 시작해 1984년 3월말 현재 252개가 되었다. 1984년 3월말 현재로 집계된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도서관통계 1984」에 의하면 대학 도서관의 수는 종합대학, 단과대학 등으로 구별하지는 않았지만 국·공립대 43개, 사립대 85개, 전문대 106개, 각종학교 18개로 집계되어 있다. 동 통계서에 따르면 장서수, 열람좌석수, 직원수 및 이용자 수

등도 양적인 면에서는 모두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질적으로도 봉사면이 다양해지고 나아진 것은 틀림없지만, 선진국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개선해야 될 점이 허다하다고 느껴진다. 그들의 대학 도서관에서는 이미 컴퓨터가 등장하여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자를 도와 주기 위해서 더욱 많은 정보를 더욱 빠르게,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들의 현황을 개략적이거나 살펴 보면서 보충되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 점들을 서술하고자 한다.

2. 현행 大學圖書館 관계 規定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들을 법적으로 강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학설치기준령」(1955년 제정), 「도서관법」(1963년 제정) 및 「도서관령」(1965년 제정) 등이다. 이들 법규정에 부족한 점이 많아 도서관 관계자들은 오래전부터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아직까지 변동이 없다.

현행 도서관법과 대학설치기준령에 나타나 있는 대학 도서관 관계 규정을 보면 종합대학이나 단과대학, 전문대학 등의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대학 도서관'으로 취급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리고 도서관법과 동 시행령에는 사서직원 배치 기준에 관해서만, 대학설치기준령에는 열람좌석 수, 비치해야 할 도서량, 학술잡지수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대학설치기준령에서 대학 도서관 관계 규정을 다른 조항은 제12조뿐으로 참고하기 위해 그 전문을 이에 적어 둔다.

대학설치기준령 제12조 : 대학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도서관을 두어야 한다.

1. 도서관의 열람실은 학생정원의 15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갖출 것.
2. 도서는 학생 1인에 대하여 30권 이상으로 하되 학과당 5천 권 이상과 학술잡지 5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예과 등에 있어서는 그 기준의 3분의 2로 한다 ('의예과 등'이란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를 뜻함).

현실적으로 이 조항만을 가지고서는 제반 사항을 다 포함하지 못하므로 앞으로 속히 대학 도서관 관계의 모든 기준들을 자세히 규정한 새로운 개정법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다행히 문교부에서 1980년 대학 도서관 육성을 위해 각 대학에 지시한 「대학 도서관 운영 개선방안」이 좀더 세밀하게 기준을 보여 주고 있으며, 한국도서관협회(이하 '도협'이라 칭함)가 1982년에 작성한 「대학 도서관 기준」이 지금까지 나온 어느 기준보다 가장 자세히 여러 항목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각 대학 도서관들은 앞서 말한 현행 법규에서 규정한 기준에만 급급하지 말고 그 이상이 되도록, 적어도 도협이 제시한 대학 도서관 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3. 資 料

1) 장 서

우리나라 252개 대학 도서관 전체가 소장하고 있는 총 장서수는 1984년 3월 31일 현재 16,571,985권인데, 그 중에서 동서는 10,947,904권, 서서는 5,624,081권이다. 학생 1인당 도서수는 대학·대학교의 경우 15.2권, 전문대학과 각종 학교는 9.6권으로 전체 평균 학생 1인당 도서는 14.4권으로 집계되어 있다(도협 통계). 대학설치기준령 제12조에서 규정한 학생 1인당 30권에 비하

〈표 1〉 대학 도서관 장서집계표

| 장서수 | 대학종별 | 국·공립대 | 사립대학 | 전문대학 | 각종학교 |
|-------------|------|-------|------|-------|-------|
| 30만 권 이상 | | 2 | 11 | 0 | 0 |
| 20~30만 권 미만 | | 1 | 7 | 0 | 0 |
| 10~20 " " | | 5 | 16 | 0 | 1 |
| 5~10 " " | | 9 | 17 | 1 | 1 |
| 2~5 " " | | 20 | 25 | 10 | 3 |
| 2 " " | | 4(2) | 8(1) | 92(3) | 11(2) |
| 합 계 | | 43 | 85 | 106 | 18 |

주 1)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도서관통계 1984」에 의함
2) ()의 숫자는 등 실태조사시 기록에 응하지 않은 학교수

던 결반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우선 장서수에 대한 통계를 보면 〈표 1〉과 같다.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252개 대학 도서관 중 장서수가 30만 권이 넘는 대학이 13개 대학, 그 중 국·공립 대학은 2개 대학뿐이고 사립 대학이 11개 대학이다. 또한 장서수가 2만 권 미만인 대학이 115개 대학이나 된다는 점이다. 그 중 전문대학은 전체 106개 전문대학의 86.7%에 해당하는 92개 대학이 모두 장서수 2만 권 미만의 도서관을 갖고 있다. 대부분 신설 대학들이라서 미비한 상태였지만 하루 속히 자료를 최저 기준인 현행 대학설치기준령 선이라도 끌어올려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2) 잡지(정기간행물)

다음은 잡지를 알아보자. 도협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잡지종수는 총 83,341종, 그 중 국내 잡지 43,491종, 국외 잡지가 39,850종으로 집계되어 있다. 1년간(1983년 4월부터 1984년 3월까지) 잡지 구입비 총액은 47억 53만 4천 원이다. 대학설치기준령에는 일률적으로 학과당 학술잡지 5종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교부의 대학 도서관 운영 개선방안이나 도협의 기준 등에는 계열별, 학과당으로 구별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밝히면 우리나라에서 간행되는 잡지(정기간행물)의 총종수는 대학 간행물까지 포함하여 1986년 6월 30일 현재 문공부에 등록된 것이 총 1,988 종이다.

잡지 취급에 있어서의 문제는 각 도서관이 구

독하고 있는 잡지는 국내외 잡지를 막론하고 구독잡지 선정, 주문 절차, 구독 갱신, 결호 없이 비치·보관하는 일, 제본 여부와 방법 결정, 판외대출 여부, 이용이 부진한 국외 잡지에 대한 주문 취소 여부 결정 등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까다로운 문제들이 허다하나 너무 기술적인 것이라서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학 도서관의 기본적인 의무란 그 대학의 학생들과 교수진의 강의 및 연구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료들을 공급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를 계속 확보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서관 자료라 하면 도서와 잡지만을 생각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옳지 못하다. 대학 도서관 자료로서는 학과별로 혹은 주제별로 각각 그 분야의 연구 조사용인 전문도서를 비롯해서 참고도서, 정기간행물, 시청각 자료를 포함한 비책자 자료 등이 필요하며, 인쇄물이 아닌 필사본, 문서, 기계가독 데이터 베이스 등도 있을 수 있겠다. 외국의 대학 도서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이크로물 같은 것도 우리에게서 별로 보급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비인쇄 도서관 자료의 양적 기준을 문교부안이나 도협기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이용되지 못하고 있어 그것에 대한 지도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

각 대학 도서관은 자료 구성에 있어서 그 대학의 교육목적, 교과과정, 이용 대상자를 감안하여 매년 도서구입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늘 새로운 자료로 증당 증가하도록 힘써야 한다. 도서구성 정책을 수립하는 일과 예산 집행의 우선 책임은 도서관에 있겠지만 구입에 앞서 도서를 선정하는 데는 각 학과에서 선출된 도서 선정위원(교수)의 선정 협력 내지는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무래도 그 주제 분야의 도서는 교수들이 잘 알고 교육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교수들이 도서관 업무 일부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객관적으로 선정할 목적으로 간행되는 서평지, 선정도서 해제목록 같은 것이 별로 없지만 그

도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에 보내어지는 각종 출판도서목록, 광고물, 선전자료를 학과별로 수집해 두었다가 각 도서 선정위원이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4. 資料 整理 및 保管

도서관 자료를 정리하는 데는 분류법, 목록규칙, 목록배열법 등에 관해서 정규교육을 받은 정사서로 하여금 담당케 하고 모든 자료들이 이용하기 쉽게 정리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개인 소장 도서가 아닌 것은 교비로 혹은 각 학과에서 구입했거나 기증받아 가지고 있는 도서까지 모두 도서관에서 정리하여 이런 자료들의 소장 위치를 표기한 목록들을 열람용목록, 사무용목록(서가목록) 등에 배열하고 자료들은 각각 해당 부서에서 보관·이용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등 교내 전 도서의 소재를 파악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회귀본(귀중도서)과 파손되기 쉬운 자료들은 계획을 세워 마이크로화하는 것이 좋겠는데 외국에서는 서고의 수용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마이크로물이 이용되고 있다. 활용성 없는 도서들은 수시로 점검하여 자료가 새 책으로 충당되어 장서가 전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용가치가 상실된 도서일지라도 밀집서가 같은 곳에 따로 설치해 두었다가 도서관 규정에 따라 폐기처분해야 할 것이다. 도협 기준에는 소장자료의 0.3% 범위내에서 매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대학 도서관들은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는 대학설치기준령의 도서량 기준에도 미달되므로 이용되지 않는 도서들의 폐기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수적으로 늘리는 데만 급급한 형편이라고 느껴진다.

장서의 수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이용가치가 높은 자료를 잘 선정하여 비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기증도서를 받을 경우에도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취사선택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로 알고 주고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념문고 형식으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전 소장도서를 받아야 할 조건이라면 별 문제가 있

지만 이런 경우 도서수가 늘어 좋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리, 보관, 이용하는 데까지 많은 인력과 경비가 들 것을 감안해서 신중히 받아야 할 것이며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므로 이에 대비하여 매년 특별예산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늘어날 자료들을 예상하고 한정된 서고 면적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고정식 서가가 아닌 가동식 서가를 설치하도록 힘쓰면 좋겠다. 활용도서와 불이용도서를 구별하여 불이용도서를 밀집시키고 같은 곳을 만들어 별치하던 더욱 서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職 員

대학 도서관은 열람봉사 방법과 범위, 봉사 대상자, 개관 시간, 장서 규모, 도서 이용량, 정리업무 내용, 관리 업무의 내용 범위 등에 따라서 전문적(사서), 서기직(사무원), 관리용원, 학생보조원 등 다양한 직종이 필요하다. 업무 처리의 자동화·기계화가 보급되지 못한 상태이며 도서관 직원의 손을 빌어서 처리하는 일이 여전히 많은 것 같다.

고도의 학문 수준에 맞추어 문헌들을 다루고 정리하며 고등교육에 관련된 학생 및 교수들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사서들은 관리직, 봉사직을 막론하고 점점 수준이 높아져 대학원 출신으로 충당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쉽게 말해서 주체전문 사서가 필요한데 그들을 채용할 만한 처우가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서들은 대학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일반 사무직과는 달리 전문적으로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전문적인 사서직은 다른 부서 직원으로 충당할 수 없다. 따라서 사서들은 한정된 도서관내에서만 근무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무 내용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승진의 기회가 더 많은 다른 부서를 한번쯤은 생각하게 된다. 세월이 흐름과 동시에 더욱더 전문적으로 업무에 숙달하게 되고 자기가 다루는 일에 깊은 전문 지식을 축적하게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 전문적 사서는 교수 신분(faculty status) 대우

를 해주게 되어 선진국 도서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제도가 확립되고 있다. 이런 바램은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에서도 점차로 확대되어 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더욱 숙달되도록 키워져야 할 전문적 사서가 여성일 경우에 많은 대학들이 여성 사서들을 결혼 후 몇 개월 이내로 퇴직하도록 내규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며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전문적 입장을 살려 앞으로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적 사서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도서관장은 사서들에게 필요한 연수를 갖게 하고 실무자 강습회, 학술발표회 등에 참가하도록 배려함이 좋을 것이다.

6. 閱覽制度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 열람제도는 대체로 폐가제 즉 도서나 기타 자료를 서고에 두고 도서 청구서를 써서 도서관 직원의 손을 빌어 대출해서 보는 열람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원래 자료를 소중히 여기다 보니 이용시키는 쪽보다는 잘 보관하자는 쪽으로 경향이 집중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폐가제하에서의 첫째 고민은 도서를 대출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오래 기다려야 하는 점이다. 대출하려는 도서가 대출중인지 혹은 서고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배치된 서가까지 가서 확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제례식 방법 말고 이런 대출 업무에 컴퓨터가 등장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나 새로운 방법의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안다. 현재 몇 대학이 각 대학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연구·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중에도 이용빈도수가 높은 일반 참고도서만은 모두 개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모든 대학 도서관에 공통적이다. 근년에 와서는 점차로 지정도서, 학위논문, 신문·정기간행물, 약보, 지도, 마이크로필름 자료 등 자료 종류별로 혹은 형태별로 열람실을 설치하는 도서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제별 혹은 학과별로, 또는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영역별로 열람실을 나누어 운영하는 도서관들도 있기는 하지만 중앙집중제 폐가제 운영 방법을 취하는 도서관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다. 아직 주제별, 학과별, 영역별로 각각 분산·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대학 도서관은 없는 것 같다. 종합대학에서는 이용 대상자를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나누어 각각 전용열람실 내지는 별도로 도서관을 두는 운영 방법을 취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자료량의 절대 부족과 행정적 측면에서도 어려우므로 잘 용납이 되지 않지만 장래에는 캠퍼스가 넓은 종합대학이나 대규모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이 늘어나 복잡해지고, 학문이 발달하여 전문화되며 정보 처리의 신속화를 바라게 되고, 고도의 전문적인 도서관 봉사를 원하게 될 때, 이용자 수준에 따라 혹은 전문 주제영역에 따라 혹은 각 대학 단위로 분산제에 대한 유혹을 받을 것은 틀림없다. 이용자편에서는 이런 욕구가 강해질 지라도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운영 경험으로 보아 좀처럼 중앙집중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중앙집중식 폐가제 일별도의 운영으로는 이용자 욕구에 응하기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해결책으로는 중앙집중식이라 할 지라도 특별한 자료들을 위한 통제구역을 두고 대부분의 자료들은 자유롭게 직접 볼 수 있는 자유접가제 쪽으로 경영 방법을 바꾸는 것이 현명하다고 느껴진다. 이 방법은 비단 대규모 도서관만 아니라 소규모 도서관에도 부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참고열람실처럼 이용률이 높은 지정도서, 학위논문 등도 개가제로 못할 것이 없다고 본다. 한정된 예산, 부족한 인원으로 많은 문헌과 정보를 구하는 이용자에게 일일이 대응하기란 힘들 것이므로 도서관 직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직접 자료를 보고 선별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력과 경비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방법을 채택했을 때 따르는 어려움, 예컨대 자료들의 서가상의 배열 위치가 흐트러지는 일, 이용에 따른 도서관 자료들의 파손 등을 염려하게 되나 근로장학생을 시간제로 투입하여 정돈케 하면 그리고 이용자들을 제도

하는 일을 힘쓰면 이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복사기 등을 사용하기 쉽게 시설하면 훨씬 나아질 것이다.

대규모 도서관에서는 자료 도난 방지를 위해 도서관 자료 등에 자력테이프를 부착시키고, 자동탐사기, 자동회전식 출입문(turnstile) 등을 가설했이 필요할 것이다. 하루바삐 도서관 운영 방향을 '이용시키는 쪽'으로 바꾸고 이런 문제들을 대처해 나간다면 그만큼 빨리 도서관이나 이용자가 이 제도에 적응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료 이용률이 지금과 족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해질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7. 參考奉仕 업무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 업무 중 참고봉사 업무(이하 '참고업무'라 한다)는 그 내용과 수준의 차이는 있을망정 대·소규모 도서관을 막론하고 모든 대학 도서관에서 발전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참고업무는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에선 1956년 당시 연희대학교 도서관이 참고도서실을 마련하고 출발한 것이 그 효시이다. 그로부터 30년 동안 이 참고업무는 이용자에 대해 직접 도움을 주는 중요한 봉사업무로서 서서히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 참고열람실 관리 정도밖에 못하는 정도에서부터 이용자에게 대답하며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도까지 내용과 수준의 차이는 있을망정 대·소규모 도서관을 막론하고 참고업무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업무란 "도서관 이용자가 정보를 구하고, 또는 조사 연구를 위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이용자를 돕는 일과 직접 관계하는 도서관 업무의 일면이다"는 뜻으로 정의하고 있듯이(A.L.A. Glossary of Library Terms, 1943) 대학 도서관 이용자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참고업무는 어느 도서관 업무에 못지 않게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본 참고도서와 각종 참고자료들이 정비되어야 하고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가진 참고사서가 배치되어야 한

다. 대학 도서관 이용자는 주로 고등교육, 대학원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며 심지어는 교수들의 요청에도 부응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주제전문 참고사서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각 주제 영역별로 이런 고급인력을 다 둘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의 실정이고 보니 자연히 초보단계의 업무에 머물게 된다. 이용자의 요구가 없이는 참고업무는 한산해질 수밖에 없다. 이용자의 질문, 요구가 있더라도 그 내용과 수준이 천박하던 거기 맞추어 참고업무도 낮아진다. 반대로 생각해서 참고사서가 이용자의 여하한 질문·요구에도 적극 응하지 못하던 자연 한적상태가 되기 쉽다.

물론 참고업무가 눈에 보이는 이런 일만은 아니다. 미래에 있을 이용자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서지 편찬, 자료 선정과 조직, 봉사 및 집서의 평가, 타도서관과의 협동 등 해야 할 일은 얼마든지 있지만, 봉사하려는 마음 없이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위치에서 게으름을 피우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본래의 참고업무 범주에 들지 않았을 잡다한 다른 부서의 일이 참고사서에게 떠맡겨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고사서의 경력, 그의 주제 지식, 서지적 지식, 어학력, 일에 대한 의욕 및 자세, 그의 인격 등은 참고업무의 수준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바라고 싶은 것은 도서 및 도서관 이용 지도에 힘쓰면 좋겠다는 것이다. 개개인에게 혹은 참고사서가 근무하는 위치에서 혹은 단체로 교실이나 도서관 시설을 이용해서 도서관 자료 이용법을 가르쳤으면 하는 것이다. 신입생들에게 도서관을 소개하는 일(orientation)을 더 조직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본격적으로 실시하던 그만큼 도서관 자료의 이용이 활발해지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에서는 전산화 작업이 걸음마도 시작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더욱 신속 정확하게 이용자에게 문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컴퓨터의 단말기를 이용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온라인으로 탐색하는 그런 참고업무가 우리의 대학 도서관에서도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희망해 본다.

8. 도서관의 相互協力

한 도서관이 각국에서 간행되는 모든 자료를 다 소장할 수는 없다. 자료가 있는 곳에 학생, 교수들이 찾아 오기 마련이다. 교수 신분으로는 어느 대학 도서관에라도 출입이 가능하며 자료 열람도 가능할 것이지만 타대학생, 대학원생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 각 대학이 학생 및 기타 이용자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자기 대학 학생들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인데 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공부하러, 연구 조사차 타대학 도서관에 찾아 온 이들에게 도서관 출입을 거절해서는 되겠는가. 그리하여 대학 도서관들은 궁리 끝에 한 쪽 대학 도서관장의 추천서를 지참하면 가능하도록 길을 터놓아 이 정도의 협력은 되는 것 같다.

현재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등이 있어 이러한 일을 비롯해서 여러 도서관 상호 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이 두 협의회가 하나의 대학협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회원 도서관끼리는 도서관 운영상의 제 문제 토의, 도서관 장서의 목록류 간행, 자료 이용상의 편의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런 것들이 발전하여 대학 도서관 상호 대차제도 확립, 참고업무 수행, 도서관 조직망(network) 형성 등이 하루속히 성취되었으면 한다. 또한 협력체제하에 각 대학 도서관이 각 주제별로 혹은 지역별로 특색 있는 장서 구성에 힘쓰고 외국에서 간행된 특정 자료가 우리나라 어디엔가 반드시 소장되어 있도록 하는 도서 구입 협력 그리고 자료 공동 보관 등 현재로는 꿈 같은 일이지만 재정적으로도 약한 각 도서관들이 개별적으로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상호 협력해서 이 꿈을 이루어 보았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 본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실현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통신수단이 고도로 발달하고 또한 전에 없던 전산처리가 가능해진 지금에서는 한번 해볼 일이 아니겠는가.

9. 맺음말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수는 많

이 늘어났지만 도서관 장서수는 대학설치기준령 수치의 절반도 못 되며 운영 면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일이 무수히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교적 허약하고 발전속도가 느린 것 같은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들을 건실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이끄는 강력하고도 효능 있는 대학 도서관 설치기준령이 새로 개정되어야 하며, 문교행정 당국이 강력한 도서관 육성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하고, 학교 당국은 관심과 열의를 갖고 대학의 어느 시설 확장보다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교수와 학생들이 도서관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충실한 도서관이 되도록 계속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은 교육기관이요, 그 교육을 뒷받침하는 온갖 학문 자료를 활용시킬 수 있는 도서관이야말로 교육을 교육답게 더욱 발전시키는 길이며 또한 이용자에게 지식 정보를 공급하는 원천인 것을 재삼 강조해 둔다. *

〈教育箴言〉

목민관의 직책은 백성을 가르칠 따름이다. 그 田産을 고르게 하는 것도 장차 가르치려는 것이요, 부역을 고르게 하는 것도 장차 가르치려는 것이며, 관직을 마련하고 목민관을 두는 것도 장차 가르치려는 것이요, 벌을 밝히고 법을 신칙하는 것도 장차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모든 정치가 제대로 행하여지지 않아서 교육을 일으킬 겨를이 없다면 이는 百世에도 善治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民牧之職，教民而已，均其田産，將以教也，平其賦役，將以教也，設官置牧，將以教也，明罰飾法，將以教也，諸政不修，未遑興教，此百世之所以無善治也”.

〈牧民心書，禮典六條 教民〉